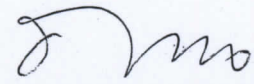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위원장

결재



2016년 4월 29일 금요일 12:00 ~ 14:00

장소

집현관10층 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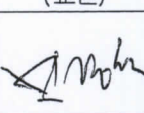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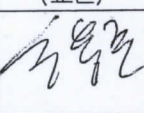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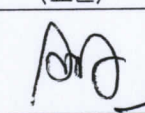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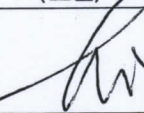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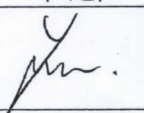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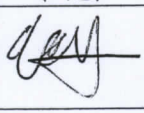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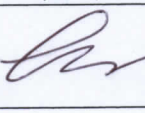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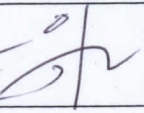
안건 학칙 개정(안) 심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교비회계 대납 관련 보전계획 변경(안) 심의

회의내용

1. 회의 내용

(1) 학칙 개정(안) 심의

- 이경근 의장이 학칙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함.
- 이수열 기획과장이 학칙 제2조(교육조직), 제3조(부속기관 등), 제4조(전공 및 입학정원), 제48조(학위수여)제1항, 별표 #2-1 연계전공별 학위수여종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함.
 - 제2조(교육조직) : 2017학년도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신설에 따른 교육조직을 반영함.
 - 제3조(부속기관 등) : 정관시행세칙의 대학교 부속기관 변경을 반영하여 융합창업기업가센터,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ES)센터를 삭제하고, SW융합센터를 신설함.
 - 제4조(전공 및 입학정원) : 2017학년도에 자유전공학부 법과사회전공을 법학부 법학전공으로 변경함.
 - 제48조(학위수여) : 2017학년도에 법과사회학사를 법학사로 변경함.
- 별표#2-1 연계전공별 학위수여 종류 : Social Media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이를 기업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갖춘 비즈니스 리더 양성을 목표로 소셜미디어메니지먼트소프트웨어 융합전공을 신설함.
- 자유전공학부 이재교 자유전공학부장이 자유전공학부를 법학부로 변경하는 제4조(전공 및 입학정원), 제48조(학위수여)제1항에 대하여 설명함.
- 현재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학생이 전공을 자유롭게 설계하는 유형이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2학년때 다른 학과로 옮기는 유형임을 설명함.
- 우리 대학은 로스쿨 진학을 위해 자유전공학부를 설치했으며 모집요강에도 법과사회전공을 주전공으로 함을 표시하고 있으나 신입생들이 서울대, 연세대 및 고려대 유형으로 오해하고 입학한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자퇴하는 학생도 발생하여, 현재 로스쿨 진학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 학과의 교과 커리큘럼과 일치 시키고 재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에 도움을 주기위해서는 학과 명칭 및 학위명을 명확하게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함.
- 현재 재학생들은 학과의 명칭을 법학부로하고 법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찬성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회람시킴.
- 윤성현 의원 : 자유전공학부 설치 당시에 주전공 선택시 인문사회계열 13개 학과와 법과사회 전공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고, 복수전공 선택시에 제1전공은 법과사회전공이 되며, 제2전공은 인문사회계열 13개 학과 중 선택할 수 있게 하였음. 소속 역시 단일 주전공을 선택할 시는 주전공 학과로 소속이 변경된다고 하였으며, 당시 자유전공학부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음. 자유전공학부의 주전공 신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학칙 개정안이 2014년 1월 27일 대학평의원회 회의와, 2014

위원 및 간사	인경석 (교원)	서용호 (교원)	안윤영 (교원)	유상호 (교원)	이양희 (직원)	유병국 (직원)	장덕상 (동문)	이재욱 (동문)
								
	윤성현 (학생)	이현상 (학생)	이수열 (간사)	이기명 (서기)				
								

회 의 내 용

- 년 2월 19일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부결되었음을 설명함.
- 윤성현 의원 : 사회수요에 맞게 학사구조를 개편하는 프라임사업의 측면에서도 법학과로의 명칭변경은 맞지 않음을 설명함.
- 이현상 의원 :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3조를 보면 평의원회는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음. 과거 대학평의원회에서 자유전공학부의 주전공 명문화 및 복수전공 의무화는 부결이 되었으나, 지금 학교에서는 제1전공을 법과사회전공으로 의무화하여 평의원회의 부결 결과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함.
- 이재교 자유전공학부장 : 2014년에 대학평의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은 자유전공학부의 복수전공 의무화를 상정했다가 부결된 것임. 법학은 법조인이 되는 길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분석적·논리적·합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학문이며,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분석적·논리적·합리적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이 있다고 설명함.
- 이재욱 의원 : 자유전공학부의 기본적인 설립취지가 로스쿨 진학인 것 같은데, 자유전공학부의 교수 수는 몇 명인지 질의함.
- 이재교 자유전공학부장 : 자유전공학부 소속 교수는 전임 3명, 석좌 2명이라고 답변함.
- 이재욱 의원 :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해서 타 전공으로 옮긴 학생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질의함.
- 이재교 자유전공학부장 :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에 입학한 학생 중에 많은 학생이 타 전공으로 옮겼으며, 그 이후에는 거의 없다고 답변함.
- 이현상 의원 : 3분의 2이상의 학생이 경영, 호관 등으로 옮긴 것은 자유전공학부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함. 2014학년도부터 타 전공으로 옮긴 학생이 없는 것은 제1전공을 법과사회전공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자유전공학부 학생이 전원 동의한다고 했는데,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조사를 했다면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함.
- 안윤영 의원 : 자유전공학부의 명칭 변경은 재학생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학생 의원은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자유전공학부 재학생들의 공통된 컨센스스를 반영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함.
- 윤성현 의원 : 전년도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과 이야기 했으며, 전체 학생들이 법학부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을 설명함. 다만, 지금 남아있는 학생들은 법과 사회에 매리트를 느껴서 다른 학과로 이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에 타 전공으로 옮긴 학생들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했던 학생들 모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함.
- 이재교 자유전공학부장 : 당초 학부 명칭 및 학위명 변경은 2017학년도 신입생들에게 적용할 예정이었음을 설명함. 하지만, 기존 재학생들도 학위명을 법학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재학생 전원이 찬성한 서명을 가지고 왔기에 재학생도 변경된 학위명을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임을 설명함. 다시 말해서 재학생들의 학위명 변경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함.
- 윤성현 의원 : 법과사회전공 학생이 아닌 호텔, 경영 등 타전공으로 옮긴 학생들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요청함.
- 이재교 자유전공학부장 : 이번 평의원회의에서 통과가 안되면 2017학년도 입시에 반영할 수 없음을 설명함.
- 안윤영 의원 : 당장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해야 하는 소속 재학생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현재의 법과사회학사 학위명을 가지고 기업체에 지원했을 경우에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함. 기존 재학생들이 학위명 변경을 요청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함. 재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함.
- 이경근 의장이 다른 평의원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함.
- 이재욱 의원 : 법학부로 변경시에 교원 확보 등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서용호 의원 : 자유전공학부 설치시부터 로스쿨 진학을 염두해 두고 설치되었는지, 교무위원회에서 문제 제기없이 통과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함.

회 의 내 용

- 민경석 의원 : 자유전공학부 설치 당시 취지를 살려 운영해야 하는지, 4년간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하면서 커리큘럼 등 학과의 효율적 운영에 맞추어 변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유상호 의원 : 재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도 있음. 법학부와 자유전공학부라는 시스템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함.
 - 유병국 의원 : 설치당시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현재 재학생들 중 대부분 주전공을 찾아갔고 고학년의 잔여인원과 법학전공으로 알고 입학한 저학년만 남은 상황에서 전공명과 학위명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 전원의 서명을 보고 졸업 후 사회진출을 고려해봤을 때 전공과 학위명이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나가는 게 좋다고 판단되기에 재학생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이재교 자유전공학부장 : 자유전공 설치 당시 커리큘럼부터 법학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며, 법학부로의 변경 준비는 되어 있고, 교원 수의 부족은 계속해서 충원해 나가야 할 상황임. 복수전공을 의무화시켜 타 전공도 같이 공부해서 로스쿨 진학시에 유리하게 하려고 했으나 과거 평의회에 부결된 적이 있음. 자유전공학부 설치 초기에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로 전과를 시켜줬으나 운영하다보니 학생, 교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학부로 변경하려고 오늘 평의회에 상정한 것임. 교무위원회에서는 교무위원들 간에 의견을 충분히 주고받아 통과되었으며 평의회에 상정된 것임.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자유전공학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을 승인할 것이냐, 아니면 부결시킬 것이냐를 판단해 주시기 바람.
 - 윤성현 의원 : 학과 설치 당시의 취지에 변경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함. 학생들의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되기를 요청함.
 - 이재욱 의원 : 법학사 명칭 변경시 기존 재학생의 학위명도 법학사로 변경되는 것인지, 2017학년도 신입생들만 법학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함.
 - 이재교 : 당초에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법학사 학위를 받게 되나, 기존 재학생들도 법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학칙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음. 다만, 현재 4학년 학생들은 2017학년도 이전에 졸업하기에 법과사회학사 학위를 받음.
 - 윤성현 의원 : 자율전공학부 초기 설립 당시 1학년을 마치고 주전공을 선택함에 따라 소속 변경이 가능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전공을 법과 사회로 의무화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거쳐 변경되었는지 질의함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자율전공학부와 관련하여 주 전공 및 소속과 관련하여 설명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질의함
 - 이경근 의장 : 4년간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해당 학과 교수님과 재학생들의 동의가 있는 상황임. 평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들었기에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기로 함.
 - 이경근 의장 : 자유전공학부 법과사회전공을 법학부 법학전공으로 변경하고, 법사회학사를 법학사로 변경하는 제4조(전공 및 입학정원), 제48조(학위수여)제1항의 학칙 개정안에 동의하면 1번으로 투표하고, 이번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면 2번으로 투표하기로 함.
 - 이경근 의장 : 무기명 투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함.
 - “대학평의회 운영 규정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평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에 근거하여 11명의 평의원중에 9명이 출석하였고, 출석의원의 9분의 5가 찬성, 9분의 4가 반대하여 제4조(전공 및 입학정원), 제48조(학위수여)제1항의 학칙 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발표함.
- (2)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교비회계 대납 관련 보전계획 변경(안) 심의
- 이경근 의장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교비회계 대납 관련 보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함.
 - 이재교 법무감사실장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교비회계 대납 관련 보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함
 -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회계로 지급해서 2013년도에 문제가 되어 교육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564,899천원, 2015년 549,755천원을 회수하였음을 설명함.
 - 재직자는 급여에서 일괄 공제를 하기에 문제가 없으나, 환수계획 수립 이전에 퇴직하신 분과 외국인 교원의 경우 환수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설명함.

회
의
내
용

- 현재 퇴직자 미 환수금액은 163,493천원임을 설명함.
- 퇴직자 보전방법 변경계획(안)은 1) 퇴직자 125명 중 ‘대학발전기금’ 형태로 이미 반납한 16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지속적 환수를 원칙으로 하되, 2) 매 회계연도 보전계획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당해 연도 ‘용도를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교비회계 대납 보전용으로 명시한 기부금’ 재원에서 보전하고, 부족시에는 ‘용도를 명시하지 않은 기부금’ 재원에서 보전함을 설명함.
- 유병국 의원 : 퇴직자에 대한 변경계획안 제출이기에 재직자 내용은 삭제하고 퇴직자에 대한 내용만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함
- 이재교 법무감사실장 : 계획의 일부이기에 재직자에 대해서든 퇴직자에 대해서든 계획서에는 포함되어야 함을 설명함.
- 윤성현 의원 : 법인 재단전입금으로 충당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함.
- 이재교 법무감사실장 : 과거 임금인상의 하나의 방법으로 연금을 납부해 주는 방식으로 한 것임. 일부 대학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대학은 구성원들이 단합을 해서 환수에 적극적으로 응해주고 있음을 설명함.
- 이경근 의장 :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교비대납 보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기에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함.

2. 회의 결과

- 학칙 제2조(교육조직), 제3조(부속기관 등), 제4조(전공 및 입학정원), 제48조(학위수여)제1항, 별표 #2-1 연계전공별 학위수여종류의 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교비대납 보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3. 폐회선언

의장은 모든 안건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함. (14:00)

4. 회의자료 : 첨부 참조

- 학칙 개정(안) 1부.
-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교비회계 대납 관련 보전계획 변경(안) 1부. 끝.